



의안번호	제128호
------	-------

<p>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0. 10. 13.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28호
----------	-------

제출연월일 : 2020. 10. 1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개정이유(배경·필요성)

- 도내 인접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피해 갈등 사전 예방을 위한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 운영 결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협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축사육제한구역 추가 설정(안 제2조제9호, 별표 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기타사항
 - 가.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다. 규제 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라.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 2020. 7. 22. ~ 2020. 8. 11. (20일 이상)
 -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바. 충청남도 소관 실과 : 물관리정책과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서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단, 호소(湖沼)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수 시 지면이 접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법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제한거리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 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1,500m 이내 - 소, 젓소, 양, 염소, 사슴, 말 600m 이내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존 제한구역 경과조치) 조례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환 경 과 장	이 철 희
	수 계 관 리 팀 장	김 상 수
	담 당 자	김 준 기 (746-5553)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7조 및 제8조의2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비 고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 6조) 및 그 인접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집단주거지역(80세대이상 공동주택) 부지(단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500미터 이내 지역 	
도시지역 및 그 인접지역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다(「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제3항 및 별표24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는 제외) ①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 총 수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 (임대주택의 경우 건축주 포함) ②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에서 약취 저감을 위한 약취방지시설 설치로, 구조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가축사육 면적의 증가는 불가함) 	
※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2,000m 이내 - 소, 젓소, 양, 염소, 사슴, 말 : 500m 이내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내 - 소, 젓소, 양, 염소, 사슴, 말 : 600m 이내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7조 관련)

구분	제한구역	비고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그 인접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집단주거지역(80세대이상 공동주택) 부지(단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500미터 이내 지역 	
도시지역 및 그 인접지역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11조에 따라 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다(「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제3항 및 별표24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는 제외) ①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 총수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임대주택의 경우 건축주 포함) ②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로 구조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이 경우, 가축사육 면적의 증가는 불가함) 	
※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2,000m 이내 - 소, 젓소, 양, 염소, 사슴, 말 : 500m 이내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7조 및 제8조의2 관련)

구분	제한구역	비고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그 인접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집단주거지역(80세대이상 공동주택) 부지(단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500미터 이내 지역 	
도시지역 및 그 인접지역 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다(「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제3항 및 별표24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는 제외) ①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 총수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임대주택의 경우 건축주 포함) ②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로 구조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이 경우, 가축사육 면적의 증가는 불가함) 	
※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2,000m 이내 - 소, 젓소, 양, 염소, 사슴, 말 : 500m 이내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 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내 - 소, 젓소, 양, 염소, 사슴, 말 : 600m 이내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 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해당 없음

나. 추계결과

해당 없음

3. 작성자

환경과장 이 철 희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 5. (생 략)

② ~ ⑤ (생 략)

2020. 9. 18. - 10. 4.까지 충남 계룡시에서 「2020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가 열립니다.



충청남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 체결 결과 알림

1. 공동체정책관-2465(2019.3.27)호 및 -2544(2019.3.29.)호와 관련됩니다.
2. 도내 인접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피해 갈등 사전 예방을 위한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 운영 결과 아래와 같이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가. 충청남도는 시·군의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한다.
 - 나. 시·군은 2021.4.1.일 시행을 목표로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 관련 조례를 2020년까지 개정 추진한다.
 - ※ 조례 개정 내용: 시·군 경계로부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500m, 소·젓소·말·양·염소·사슴은 600m로 거리 제한
3. 이와 관련, 전 시·군에서는 2021. 4. 1.일 동시 시행 목표로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 관련 조례를 2020년까지 개정하여 주시고,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에서는 시·군 조례 개정과 관련된 행정 및 예산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도 관련부서에서는 인접 타 시·도와의 경계지역에 대하여도 본 협약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정책 제안 및 타 광역시·도 협의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공동체정책관-2465(2019.3.27.)호에 의거 운영해오던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는 사업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해산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서 1부. 끝.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서

충청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은 인접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에 따른 악취 등 도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충청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인접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로 인한 환경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관한 시·군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1. 충청남도는 시·군의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한다.
2. 시·군은 2021. 4. 1일 시행을 목표로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 관련 조례를 2020년까지 개정 추진한다.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약서 16부를 작성하고,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2월 3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충 청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축사육제한 조례」표준 조례(안) 및 지형도면 작성 지원계획 알림

1. 물관리정책과-8259(2020. 6. 16.)호 및 공동체정책과-1299(2020. 2. 6.)호와 관련됩니다.
2.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20.2.3.)”에 따라 추진되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군 의견 수렴 후 작성된 표준 조례(안)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에 따른 도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불임의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20. 7. 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사 업 명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 나. 보조사업자 : 15개 시·군
- 다. 사 업 비 : 금450,000,000원(금사억오천만원) ※ 도비 30%, 시·군비 70%
- 라. 지 원 금 액 : 금135,000,000원(금일억삼천오백원)
- 마. 예 산 과 목 : 물관리정책과-수질보전·개선 관리-수계 청정 관리-축산악취 개선 추진
-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불임 1. 「가축사육제한 조례」표준 조례(안) 1부.
2. 가축사육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지원계획, 1부.
3.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부. 끝.

충청남도 지사인

수신자 천안시장(환경정책과장), 공주시장(환경보호과장), 보령시장(환경보호과장), 아산시장(환경보전과장), 서산시장(환경생태과장), 논산시장(환경과장), 계룡시장(환경위생과장), 당진시장(환경정책과장), 금산군수(환경자원과장), 부여군수(환경과장), 서천군수(환경보훈과장), 청양군수(환경보호과장), 홍성군수(환경과장), 예산군수(환경과장), 태안군수(신속민원처리과장)

주무관	김은영	유역관리팀장	김학중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	기후환경국장	전결 2020. 6. 30.
주무관	임현윤	주무관	임나슬	주무관	박수민	주무관	황석현
협조자	예산총괄팀장 도중선						

시행 물관리정책과-8951 (2020. 6. 30.) 접수 환경과-27055 (2020. 6. 30.)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물관리정책과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2732 팩스번호 041-635-3066 / kimey88@korea.kr / 부분공개(5)

함께 이겨낸 역사, 오늘 이어갑니다.

붙임 「가축사육제한 조례」 표준 조례(안)

○ 제2조(정의)

0.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 호소 등으로 자치단체간 경계지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 단서조항 추가
- 단, 호소 등으로 자치단체간 경계지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수 시 지면이 접하는 인접 자치단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 제0조(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

<p>일부 제한 구역</p>	<p>○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1,500m 이내 - 소·젓소·말·양·염소·사슴 600m 이내로 한다.</p>
-------------------------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0조 제0항은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허가 및 신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기존 제한구역 경과조치) 조례 제0조 가축사육의 제한에 따라 전부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